

의안번호	2213147
의 퇴 인	복기왕의원
회 답 일	2025.11.06.
추 계 번호	25B5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8억 800만원, 2031년 1억 6,1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3억 4,400만원(연평균 2억 6,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안 제41조의2제12항 신설 및 안 제89조)	808	60	157	159	161	1,344	269

- 주 1.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에 따르면 HW와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유지관리비는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2.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2제12항 신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음(제12항 신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1조의4 신설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재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시설, 설비 설치 등 관련 비용의 재정보조, 융자지원 사업 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 공유 등	재량규정
3	안 제42조의2 신설 (소음방지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내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89조 (권한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41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5항 신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41조의2제12항 신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계
2	안 제89조 (권한의 위임·위탁)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3	안 제41조의4 신설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 지원)	×	• (제3호)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 설비 설치 등 비용의 재정보조, 융자지원 사업 또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 공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세부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23~2024년 ‘바닥충격음 리모델링 융자사업’을 시행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음([참고자료 1])
4	안 제42조의2 신설 (소음방지 협의체)	-	• (미대상)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련 산·학·연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참고자료 2]), 개정안에 따른 소음방지 협의체 신설은 기존 협의체 기능으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사무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의 시행으로 새로운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수행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함

[표 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용역(2024년)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년도	예산액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망구축 ISP	2024	10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¹⁾ 전망치 적용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비용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용역(2024.6.25.~9.22)’ 결과를 기초로 향후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을 추산함
 - (시스템 구축비용) 추계 첫 해인 2027년 8.1억원 소요예상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비용(0.6억원), 소프트웨어 도입비용(0.2억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용(7.2억원)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5.9.)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9	2.0	2.0	2.0	2.0	2.0

[표 3]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세부내역
시스 템 구 축 비 용	인프라 도입	클라우드 비용 (년 단위)	60	· 웹서버 #1 #2, WAS서버#1 #2 DB서버 #1 #2, NAS #1, 개발서버(WAS) #1, 개발 서버(DB) #1, 방화벽 서비스, DB보안, 모니터링, 기 술지원 등
		소프트웨어 비용	24.9	· 운영서버 라이선스(리포팅툴, 4Core) - 임시홈페이지 구축 시 구매 · 운영서버 라이선스(리포팅툴, 4Core) - 추가 구매(16,280,000원) · 개발서버 라이선스(리포팅툴, 2Core) - 8,580,000원
	응용 소프트 웨어 개발	직접개발비 (FP방식)	722.7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 시스템 직접 개발비 (FP방식)
	합계		807.6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클라우드 비용) 매년 0.6억원 소요 예상(2027년은 시스템 구축비용 내에 포함)
- (시스템 유지·관리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 유지 관리 효율과 국토교통부의 ISP 결과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용의 12%로 가정²⁾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³⁾

□ (일부추계) 이상의 가정에 따라 추계한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2) 효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효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효율(10~15%)을 준용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3)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에 따르면 HW와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스템구축비용	807.6	—	—	—	—	807.6
클라우드 비용	—	60	60	60	60	240
유지관리비	—	—	96.9	98.9	100.8	296.6
합계	807.6	60	156.9	158.9	160.8	1,344

- 주 1.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에 따르면 HW와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유지관리비는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2.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층간소음 성능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23~24년 종료)

1. 층간소음 성능보강(바닥매트) 사업설명자료(2023~2024년 종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 소음 차단성능 효과가 있는 소음매트 구입·시공 비용을 용자 지원하여 기축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23년 예산 1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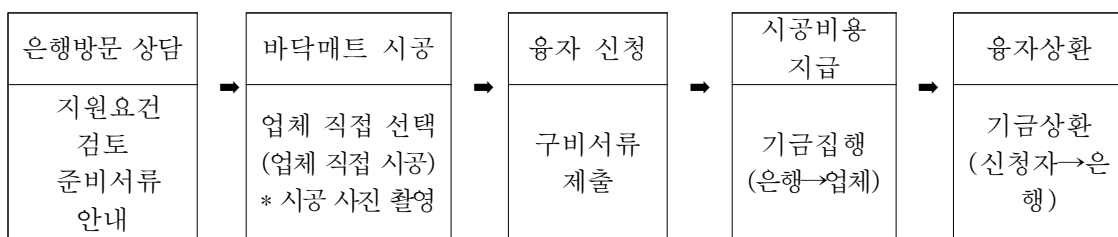
□ 지원내용

- (대상) 소득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개인(85m² 이하 주택)
 - ① 저소득층(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② 중산층(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중 유자녀(만 19세 미만) 가구
- (대출한도) 매트 구입·시공비 호당 최대 300만원 용자 지원
- (대출금리) 무이자(지원대상①) 또는 1.8%(지원대상②)
- (상환) 상환기간 최대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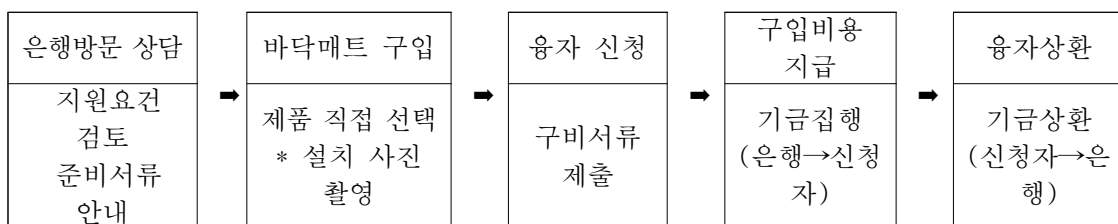
□ 예산: 2023년 150억원, 2024년 27억원

□ 사업집행절차

- 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



- 제품을 직접 구입·설치하는 경우



2.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2023~2024년 종료)

□ 사업목적

- 기축주택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1·2·3등급)를 사용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 용자지원

□ 지원내용

- (대상) 주택 리모델링 시 고성능 바닥구조(1·2·3등급*)를 사용하여 바닥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85m² 이하 주택)

* 기존 1·2등급에서 1·2·3등급으로 변경('24.9.6 변경)

- (대출한도) 호당 500만원
- (대출금리) 4.0% → 2.0%('24.9.6 변경)
- (대출기간) 3년 → 5년('24.9.6 변경)
- (담보) 주택담보대출
- (상환) 만기일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24.9.6 변경)

□ 예산: 2023년 40억원, 2024년 12억원

□ 사업집행절차

- 고성능 바닥구조(1·2·3등급)를 사용하는 경우 기금 용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준공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출구조와 유사



[참고자료 2] 층간소음 정책협의체 운영 개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급과 제출자료

□ 추진배경

- 층간소음 관련 정부와 산·학·연간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통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이행력 확보 필요

□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 (구성) 국토부, 공공기관(LH, 국토안전관리원), 산업계(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학계(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역할) 참여기관별로 제도 운영·홍보(공공), 최신기술 및 업계 동향 공유(산업계, 학계), 정책 발굴·연구(연구기관) 등 역할 수행
 - ** (공공) 정책수립, 제도 운영 및 홍보 (산업계) 제도개선 건의, 업계 동향 공유 (학계) 기술동향 공유, 세미나 개최 (연구기관) 제도개선·기술 연구, 정책 발굴
 - (제도개선) 사후확인제 등 층간소음 제도보완 건의 및 개선
 - (동향공유) 포럼·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동향 및 업계 현황 공유,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및 성능검사 매뉴얼 등 연구 교차검토
 - (정책발굴·홍보) 층간소음 정책연구 수행, 정책방향 설정 및 홍보
 -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고도화 및 우수기술 보급 지원방안 모색
- (운영) 국토부 주최, LH 주관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발굴 등을 위한 반기별 전체회의 및 이슈 대응을 위한 수시회의 개최
 - ※ 제도 정착, 현안 해소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실무중심으로 운영하고, 현안·이슈 대응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 외 관계기관도 초빙하여 수시회의 운영

□ 협의체 참여 대상기관

구분	기관별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 22.12월 층간소음 전담조직(국민주거혁신실) 신설 ○ 층간소음 우수기술 실증·도입(1차 양주회천, 2차 평택고덕) ○ 민간·공공 기술협력을 통한 우수기술 개발·공유 ○ 층간소음 기술혁신 및 종합전략 연구용역(~'25.7)
국토안전관리원 * 성능검사기관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23.2)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 제정('23.4.2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피해 손해배상관련 사례 조사·분석연구(~'23.12)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업무 매뉴얼 마련 용역(~'23.10)
한국주택협회	○ 법령·제도 개정안, 연구결과 회원사 공유 및 의견조회 ○ 국토부·연구기관 등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하여 업계 의견 개진
대한주택건설협회	○ 층간소음 관련 중소·중견주택업체 대상 정보제공·홍보 및 의견수렴
대한건설협회	○ 주택관련 업무 수행(신사업실) ○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른 영향 등 연구과제 의뢰(한국건설산업연구원 수행)
대한건축학회	○ 22년 9월 건축음향위원회 신설 ○ 건축음향관련 학회 기준 제정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 공동주택 생활소음 관련 학회지 특집호 발간(23년 8월호) ○ 생활소음관련 국제세미나 개최예정(23년 10월)
한국건축시공학회	○ 산학연 실무진으로 구성된 층간소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층간소음 개선방안 및 기술교류 ○ 층간소음 기술세미나 개최(분기별 1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 층간소음 등 건축물 소음진동 관련 산학연 학술교류 ○ 건축물 차음기술 및 정책 개발 추진 수행 ○ 산학연 학술교류회(분기별 1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 ○ 층간소음 등 건축 및 환경 소음진동 연구용역 수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층간소음 관련 저감기술 국가 R&D 수행 ○ 층간소음 기준 제·개정 관련 정부정책지원 ○ 층간소음(인정제도 및 사후확인제도) 기준 제·개정(안) 마련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기관